

베이커리 시장 개척을 위한 식품제조업

신고제로 기준완화, 정확한 이해 필요

■ 취재 / 정한상 jeong@mbakery.co.kr

최근 베이커리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식품제조업은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식품제조업은 한정된 기존 시장을 탈피해 높은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와 법규이해는 미미한 실정이다.

식품제조업은 신고제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제품이 외부로 납품되기 때문에 단속의 1차 대상이 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려면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규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식 결여돼

제과점은 기본적으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부판매의 경우 주문에 의한 배달을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판매방식에서 문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제품을 주문한 경우, 주문 당사자가 직접 제품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차 판매를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돼 휴게음식점 영역을 벗어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단속 대상인 줄 모르고 영업한 경우가 많다.

관할 관청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제과점에서 배달판매를 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이고 예식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도 납품보다 업소의 대리구입 성격이 강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케이크 카페에 식품제조업 신고 없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생산된 제품을 타 업소에서 재판매하거나 OEM으로 납품할 경우 식품제조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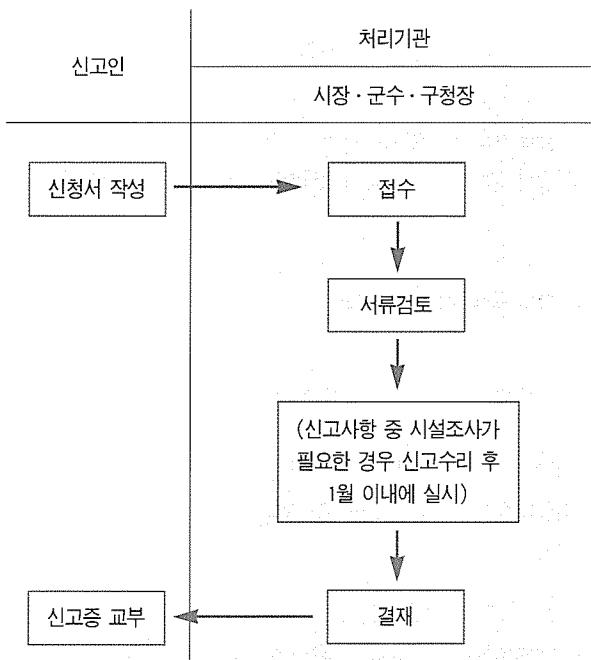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또한 신고한 영업을 폐업한 때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식품위생법 제 22조 이외에 관련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이나 저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식품제조업 허가는 신고제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위생교육필증, 제조방법설명서,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와 수수료 2만 8,000원이 필요하며 면적에 따라 소정의 지역개발공채 2만원~5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서류 검토 후 신고증이 교부되면 1개월 이내에 시설기준에 대한 실사를 받는다.

기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99.11.13) 및 동법 시행규칙(99.12.29)이 개정·시

<표 1> 신고수리절차



행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가 영업신고로 변경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허가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국민 식생활과 경제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의 허가제도는 식품제조설비 요건이 엄격해 불필요한 장비까지 모두 갖춰야 됐지만 현재는 김치 제조의 경우 솔 하나만 있어도 식품제조업 허가를 낼 수 있다”고 말해 자격기준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고수리 절차의 유의점

절차	세부내용
접수전 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한 후 접수. 신고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신고인이 직접 확인. 다른 법령에 위반이나 저촉시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신고수리가 되도 영업하기가 어려움.
접수	수수료 확인
서류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소방법 등 이법에 명시된 타법령에 대해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존재 여부 확인. -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결재	신원조회 불필요(제 24조 제 2항 규정)
신고증 교부	<p>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월 이내에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청구해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 22조 규정으로 정한 법령 외에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촉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육외공고불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기반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현재 식품제조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신고를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업 업소는 1년에 한번 또는 수시로 관할 관청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돼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은 위생상태 이외에 종업원의 건강진단, 시설기준, 위생교육, 제품표시 기준의 유무, 제품의 상태 등을 포함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식품제조업은 일차적으로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구청의 부족한 행정력을 시청의 보건위생과에서 지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청의 경우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소비자단체와 명예식품감시원과 함께 지도활동을 펴고 있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녹색연합,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지도활동을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도 별도의 감시와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은 무엇보다 관리가 더 중요시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차별화 된 제품력을 보유해야 하며 최적의 생산시설 확충, 근로조건 개선, 청결한 위생관리, 품질관리철저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 유명 제과점에서는 이미 기존 매장에서 판매되는 매출보다 외부로 납품하는 매출이 클 정도로 활성화 된 곳이 많다.

앞으로 제과점도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부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1